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11. 2.
운영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발의일자: 2022년 10월 21일
- 나. 발 의 자: 남완현 의원 외 3명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26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(2022. 10. 31.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남완현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조례의 경쟁 제한·소비자권익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
 - 「입법·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입법·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 추천 대상자 중 변호사의 등록 협회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개정함.
-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「2022년 경쟁제한적 조례·규칙 196개의 개선 과제」 중 ‘진입제한’에 대한 과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변호사 등록 협회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쟁제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완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0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10월

발의자 : 남완현·유승용·우경란·
김지연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기존 조례가 경쟁을 제한하고, 권익을 제한함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입법·법률고문 위촉(안 제4조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2. 10. 20. ~ 10. 24.)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서울지방변호사회”를 “대한변호사협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위촉) ① 입법·법률 고문 은 <u>서울지방변호사회</u>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, 그 밖에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 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 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 다.</p> <p>②·③ (생 략)</p>	<p>제4조(위촉) ① ----- -- <u>대한변호사협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